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9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3.)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남기게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중대한 피해는 아동의 사망일 것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개별 사건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후 사후적인 대책 마련 수준에 그칠 뿐 이에

대한 공적 조사 체계가 미흡하며,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충분히 진단한 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지체계의 마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법령, 관행,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책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 수준의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두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첫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분석 실시 시점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사망사건의 사안에 따라 사망사건 발생 시점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망사건 발생 초기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 및 조사로 인해 개정안에서의 분석은 제한적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관계 기관 간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제29조의9제3항)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명시적으로 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임.

한편,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기구로서 작동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증가하거나 미시적 차원의 사례분석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역 차원의 분석 기구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음.

그 외, 법 체계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안 제29조의9제3항 후단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안 제29조의10제2항 및 제29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3)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등 관련 입법례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

의 형사사법정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안 제29조의10제5항의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 입법례를 반영하여 재정리가 필요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